

## 정부 '전후배상' 거론 검토 - 배경과 전망

정부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일본의 한국민에 대한 전후처리와 배상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검토작업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시점을 택해 배상문제를 한-일간의 외교적 사안으로 제기하려는 데는 무엇보다 민간차원의 대일본배상 및 사과요구가 일본 법원의 제소형태로 계속 비화되고 있는 등 여론이 큰 압력수단으로 작용했다.

또한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한국민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3천억엔이 아직도 일본 은행에 공탁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것도 우리 정부의 새로운 관심을 촉발했다.

정부는 결국 여론의 압력과 사태 전개에 따라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매듭지어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러나 배상문제가

갖는 정치적 미묘성과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지난 65년의 '청구권 협정'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청구권 협정 2조1항이 두나라간, 두나라 국민간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이 협정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들이 거의 무시됐

인 견해이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물론 국가간의 법률적·계약적 성격의 협정에 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정이 반드시 당사국 동의의 필수적인 기초가 되어야만 원용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다.

외무부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줄 계획이다. 외무부는 법률적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떠나간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일 배상문제를 풀이

## 민간단체 잇단 사과요구·제소에 부담

## 안보·경협 관련 정부내 시각차 걸림돌

### 실무차원서 다루기는 하되 당장 큰 변화 없을듯

거나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해 청구권 협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가는 데는 정부의 실무적 준비와 대응 못지않게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확고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발을 묶는 몇가지 환경적 요인과 함께 정권 담당자들의 고의적 무관심, 그리고 실무·차원에서의 갈등이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들이다.

정부의 대일본 운신폭을 제약하고 있는 외부환경적 요인은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막강한 경제력

을 기초로 한 한-일 경제협력 지속 필요성이다. 배상문제라는 '과거'의 사안을 정면으로 제기해 한-일관계가 불편해지면, 일본에 북한과의 수교교섭에서 우리의 전제조건을 무시해버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내에 팽배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무엇보다 앞서서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아온 역대 정권담당자들은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정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본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

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려 했다.

이러한 대일정책의 기초는 5공에 이어 6공에도 그대로 유지돼왔다. 정권 담당자들의 대일관계 운용기조가 이러한 노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무관료들이 일본 배상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정부 부처의 어느 한 부서 혹은 특정 부처의 실무부서가 배상문제를 거론했다가도 서로간의 시각차와 이해관계가 엇갈려 호치부지됐던 것이다.

정부가 모처럼 광복 46돌을 계기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아직 실무차원에 국한돼 있고, 과거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경험에 미뤄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걸려져야 하는 만큼 주일대사관을 포함한 정부당국의 구체적 대응이 주목된다. <박종문 기자>